

# 원격수업운영규정

제정 2020. 09. 15. 개정 2021.02.22. 개정 2022.02.18. 개정 2022.04.04. 개정 2022.07.25.  
전문 개정 2023.08.18., 개정 2024.02.01. 개정 2025.07.28.

##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 (용어 정의)

- ① '원격수업'이란 고등교육법 제22조에 따라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말한다. 다만, 대면수업을 하면서 동시에 방송·정보통신 매체를 활용하여 영상을 전송하거나, 대면수업의 보조 수단(수업자료 탑재, 질의·응답, 토론 등)으로써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는 경우는 해당되지 아니한다.
- ② '동시식 수업'이란 방송·정보통신 매체 등을 활용하여 교수자와 학습자가 대면하지 않고 실시간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 ③ '비동시식 수업'이란 우리 대학 e-Campus에 탑재된 수업 콘텐츠를 학습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학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수업을 말한다.

## 제3조 (원격수업관리위원회)

원격수업 콘텐츠의 질 관리와 원격수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를 둔다.

## 제4조 (원격수업 교과목 분류 및 개설 기준)

- ① 원격수업 분류는 전공 교과목과 교양 교과목을 별도로 구분하여 개설한다.
- ② 원격수업은 해당 연도 학기별로 각 학과에 개설된 총 학점의 1/2이내에서 개설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국가적 재난이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4.02.01.>

## 제5조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 ①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을 희망하는 교과목 담당교수는 아래의 신청서 서식을 원격교육지원센터에 제출해야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신청서  
[별지 제2호 서식]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계획서
- ② 접수된 개발 신청서와 계획서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15일 이내에 개발 승인 여부를 담당 교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개발된 콘텐츠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하고 필요할 경우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 ④ 원격수업 콘텐츠는 제작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경우, 수정 여부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해당 부서 또는 교수에게 콘텐츠 유지, 수정, 보완, 재제작 등의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신설 2025.07.28.>
- ⑤ 제4항에서 정한 조치 권고를 받은 콘텐츠는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정한 기한 내에 해당 콘텐츠를 수정, 보완, 재제작 등을 완료하여야 한다.<신설 2025.07.28.>

제6조(원격수업 운영, 이수기준, 이수가능학점 및 평가 관리)

- ① 원격수업 운영 및 개설 관련 업무는 교무팀에서 담당한다.
- ② 원격수업 계획 및 기획, 원격수업 강좌 품질 관리, 그 밖에 원격수업 질 관리를 위해 원격수업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 ③ 수업 주수는 학기당 15주 이상으로 하며, 학점 당 15시수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단, 교과목 특성에 따라 집중이수제로 운영할 수 있다.
- ④ 원격수업에서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으로 인정한다.
- ⑤ 동시식 수업은 질의·응답 및 토론 시간 등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인 경우, 비동시식 수업은 콘텐츠 재생시간 25분 이상, 과제 및 퀴즈 등을 포함하여 50분 이상의 학습이 이루어지는 경우 1시수로 인정한다.
- ⑥ 원격수업에 대한 성적평가는 학칙시행세칙 제23조(교과목의 성적평가)를 따른다.

제7조 (원격수업 출석관리, 폐강 및 분반 기준 )

- ① 동시식 수업은 대면수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 ② 비동시식 수업은 e-Campus 로그인과 SMS 및 이메일 인증, 콘텐츠 재생시간 등을 확인하여 출석을 관리하여야 한다.
- ③ 통신장애, 정전 등의 사유로 실시간 비대면 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조기사험 또는 추가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 ④ 폐강 기준은 대면 수업에 준한다.
- ⑤ 강좌 당 최대 수강인원은 90명 미만을 원칙으로 하되, 90명을 초과할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⑥ 장애학생에 대해서는 장애유형에 적합하게 수강신청과 수업별 시험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8조 (원격수업 강의평가)

원격수업의 강의평가는 매 학기 2회(학기 중, 학기 말) 실시하며, 수업유형에 적합한 평가 문항을 적용할 수 있다.

제9조 (원격교육지원센터)

원격수업 콘텐츠의 제작과 지원, 교직원의 원격 교육 역량 제고를 위하여 원격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10조 (외부콘텐츠 사용 및 인정기준)

타 대학 및 기관에서 개설한 원격수업의 이수는 관련 협약의 내용에 따른다.

제11조 (콘텐츠 저작권)

- ① 원격수업 콘텐츠의 지적재산권은 대학에 귀속되며,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관리한다.
- ② 콘텐츠 개발과 관련하여 사용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문제 발생 시 모든 법적 책임은 콘텐츠 개발자에게 있다.

제12조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

- ① 원격수업의 교수자, 학습자 등의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따라 운영하여야 한다.
- ② 그 밖에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은 관련 규정에 따른다.

제13조(원격 수업 시설 및 설비)

원격수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 e-Campus 관리, 원격수업 콘텐츠 제작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은 원격교육지원센터에서 담당한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학칙 및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0.09.1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0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02.2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2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2.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2월 18일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2.04.04)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04월 0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2.7.2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2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8.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2.1.>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5.7.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계획서

년 월 일

계열(학과 및 전공)		
개발 교과목	교과목명	학점(시수)
교수명		

#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계획서]

## 1. 원격수업 콘텐츠 개발 교과목명

한 글	
영 문	

## 2. 개발의 필요성 및 목적

☞ 개발 배경 및 필요성, 개발 목적, 콘텐츠 내용과 대상 교과목과의 연계성을 기술하십시오.

## 3. 해당 교과목의 교수-학습 방법

☞ 해당 교과목의 원격수업에서 적용할 교수-학습 방법의 특징을 기술하십시오.

#### 4. 원격수업 콘텐츠의 특성

☞ 해당 교과목 원격수업 콘텐츠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제시하여 주십시오.

## 5. 주차별 수업 설계

☞ 해당 교과목의 강의계획서에 부합하도록 기재하여 주십시오.

주차	주차명	학습목표	학습내용	관련자료	비 고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5주차					
6주차					
7주차					
8주차					
9주차					
10주차					
11주차					
12주차					
13주차					
14주차					
15주차	기말 고사				

## 6. 기대효과 및 활용방법

## 7. 원격수업 콘텐츠 저작권에 관한 동의

본인은 원격수업 콘텐츠(교과목명 : \_\_\_\_\_)의  
지적재산권이 해전대학교에 귀속되며,  
본 콘텐츠를 활용한 수업개설 및 운영은 「원격수업운영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르는 것에 동의합니다.

성 명 : \_\_\_\_\_ (서명)

## 8. KOCW(강의 공개) 활용 동의 여부

원격수업 콘텐츠(교과목명 : \_\_\_\_\_)를  
고등교육 교수학습자료 공동활용 서비스(KOCW)에 활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여부를 표시하여 주십시오.

동의                       비동의

성 명 : \_\_\_\_\_ (서명)